

2022년도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I.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2942호
2. 제 출 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3. 제출일자 : 2021. 10. 28.
4. 회부일자 : 2020. 11. 1.

II. 제안이유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설치·조성된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의 건전성을 강화하고자 ‘2022년도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기 위한 것임

III. 관계법령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2조 및 제53조

## IV. 주요내용

### 1. 기금사업의 목표

- 학교안전사고 및 학교폭력 피해의 신속·적정한 보상·지원과 학교 안전사고 예방을 통한 안정적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 2. 2022년도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

- 총괄

(단위:천원)

수 입						지 출				
계	교특회 계 전입금	기부 금	예치금 회수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비용자 성 사업비	인 력 운영비	기 경 본 비	예치금
14,862,259	0	0	7,671,855	23,880	7,166,524	14,862,259	7,598,411	1,261,955	310,730	5,691,163

※ 기 타 수 입: 공제료 수입 + 교육활동참여자 공제료 + 소방사업수익 + 학교폭력피해지원구상금 + 법인세 환급금 + 잡수입

※ 비용자성사업비: 공제사업비 + 예방사업비 + 학교안전사고피해자상담지원비 + 학교폭력피해지원비

## V.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김창범)

###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계획안은 2021년 10월 28일 서울특별시교육감에 의해 의안번호 제2942호로 제출되어 2021년 11월 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계획안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에 따라 교육감이 설치하고 학교안전공제회가 관리·운영하는 기금으로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 2. 주요 검토의견

#### 가. 기금 개관

-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 제52조1)에 따라 학교안전공제 사업 및 학교안전 사고의 예방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감이 설치한 것으로,

동 기금의 관리·운영은 같은 법 제52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sup>2)</sup>에 따라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이하 ‘학교안전공제회’<sup>3)</sup>)가 맡고 있습니다.

- 동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4)에 따라 특정한

---

1) 제52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교육감은 학교안전공제 사업 및 학교안전사고의 예방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공제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공제로 수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기금의 운용수익, 적립금, 결산상 잉여금, 차입금, 기부금과 그 밖에 수입금을 재원으로 하여 이를 조성한다.

2) 제54조(기금의 관리·운영) ①기금은 공제회가 관리·운영한다.

3) 지난 1987년 서울특별시에 학교안전공제회가 처음 설립된 이후 현재 학교안전공제중앙회를 비롯해 17개 시·도에 학교안전공제회가 설립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목적 달성을 위해 설치·운영되는 기금인바, 서울시교육청은 2013년도부터 같은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sup>5)</sup>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 있습니다.<sup>6)</sup>

## 나. 기금 총괄

- 2022년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의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 76억 7천 2백만원, 이자수입 2천 4백만원, 기타 71억 6천 7백만원 등 148억 6천 2백만원이고 지출계획은 비용자성사업비 75억 9천 8백만원, 인력운영비 12억 6천 2백만원, 기본경비 3억 1천만원, 예치금 56억 9천 1백만원 등 148억 6천 2백만원입니다.

[표-1] 2022년도 수입·지출 계획

(단위: 천원)

수입 계획				지출 계획			
수입항목	'22년 수입액 (A)	'21년 수입액 (B)	증 감 (C=A-B)	지출항목	'22년 지출액 (A)	'21년 지출액 (B)	증 감 (C=A-B)
합 계	14,862,259	14,438,599	423,660	합 계	14,862,259	14,438,599	423,660
교특회계 전입금	0	0	0	비용자성 사업비	7,598,411	6,439,940	1,158,471
기 부 금	0	1	△1	용자성 사업비	0	0	0
용자금 회수	0	0	0	인력 운영비	1,261,955	1,269,416	△7,461
예치금 회수	7,671,855	7,394,187	277,668	기본경비	310,730	336,030	△25,300
이자수입	23,880	27,320	△3,440	예 치 금	5,691,163	6,393,213	△702,050

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 14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자금을 말한다.

5)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6) 법제처(13-0013),(2013.05.07.). '교육부-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이 교육위원회의 심사·의결 대상인지 여부' 참조.

수입 계획				지출 계획			
수입항목	'22년 수입액 (A)	'21년 수입액 (B)	증 감 (C=A-B)	지출항목	'22년 지출액 (A)	'21년 지출액 (B)	증 감 (C=A-B)
기 타	7,166,524	7,017,091	149,433	기 타	0	0	0

#### 다. 수입계획

- 2022년도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의 수입계획은 148억 6천 2백만원으로, 예치금회수 76억 7천 2백만원, 이자수입 2천 4만원, 기타수입(공제료 수입 68억 6천만원, 소방사업수익 1억 6천만원 등) 71억 6천 7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전년 대비 4억 2천 4백만원(2.9%)이 증가한 것입니다.
- 이는 예치금회수가 전년도 수입 대비 2억 7천 8백만원 증가하고 공제료 수입 등의 기타수입이 전년도 수입 대비 1억 4천 9백만원(2.1%)이 증가한 것이 주된 요인입니다.

[표-2] 2022년도 기금운용 수입계획

(단위: 천원)

항 목	세부내역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증감액
합 계		14,862,259	14,438,599	423,660
민간이전수입	교육청교육금고 기부금	0	1	-1
이자수입	이자수입	23,880	27,320	-3,440
기타수입	소 계	7,166,524	7,017,091	149,433
	공제료 수입	6,859,931	6,753,137	106,794
	교육활동참여자 공제료	31,117	30,584	533
	소방사업 수익	160,000	120,000	40,000
	학교폭력구상금 회수	94,976	93,280	1,696
	법인세 환급금	20,000	20,000	0
	잡수입	500	90	410
예치금회수	소 계	7,671,855	7,394,187	277,668
	사무국임차보증금	248,348	248,348	-
	학교안전공제기금 이월금	5,963,682	5,643,000	320,682

항 목	세부내역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증감액
	학교안전사고피해자 상담지원금 이월	126,140	140,000	-13,860
	학교폭력피해지원금 이월	1,333,684	1,362,839	-29,155

## 1) 기타수입

○ 기타수입은 ‘공제료 수입’ 및 ‘소방사업수익’, ‘학교폭력구상금 회수’ 등 사실상 공제회의 주된 수입원으로 2022년도 총 71억 6천 7백만원 편성되어 전년도(70억 1천 7백만원) 대비 1억 4천 9백만원(2.1%) 증가되었는바, 이는 ‘공제료 수입’ 과 ‘소방사업수입’ 이 각각 1.6%, 33.3% 증가한 것이 주된 원인입니다.

○ ‘공제료 수입’ 은 68억 6천만원으로 전년도(67억 5천 3백만원) 대비 1억 7백만원(1.6%)이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학생 1인당 기준 공제료는 법률에 따라 최근 3년간 학교안전사고의 발생 추이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공제료 산정기준을 정해 고시<sup>7)</sup>하게 되어 있고 학교안전공제회는 이를 기준으로 공제료의 단가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공제료는 공제사업 및 예방 사업 등의 운영비와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학교급별로 기준공제료 대비 10%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7) 교육부고시(제 2021-30호, 2021. 10. 21., 제정, 시행 2021. 10.2.77.). ‘2022년 학교안전공제료 산정기준 고시’

(단위: 원)

구분	2021년 공제료	2022년 기준공제료
유치원	2,300	2,800
초등학교	4,000	4,300
중학교	8,500	9,100
고등학교	10,500	12,100

금번 공제료 수입은 공제료 산정기준 고시액(교육부고시 제 2021-30호)을 기준으로 고시된 공제료에 급별 공제료의 조정 가능 최대치인 10%를 가산하여 계상한 것으로, 이 금액은 전년도 대비 1.6%가 증액된 것입니다.

- 이는 학생 수가 전년도 대비 3.5%(33,103명)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 1인당 기준 공제료(평균 11.9%)가 증가하고 ‘배움터지킴이<sup>8)</sup>’ 공제료가 수입대상에 추가로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 공제료 수입과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은 2022년부터 학교내 자원봉사형태의 학생보호 인력인 ‘배움터지킴이’를 「학교안전법」상의 ‘교육활동참여자<sup>9)</sup>’로 인정하면서 학교안전제회가 새롭게 1천 7백만원의 ‘배움터지킴이’ 예산을 ‘공제료 수입’에 편성하였습니다.
- 2013년 교육부는 ‘배움터지킴이’를 교육활동참여자에 포함할 것을 권고하였는바,<sup>10)</sup> 이에 따라 학교안전공제회가 금번 운용계획안에 ‘배움터지킴이’ 공제료를 ‘공제료 수입’ 사업으로 편성한 것은 그동안 학교안전사고의 사각지대에 있던 자원봉사 형태의 근로자에 대해서도<sup>11)</sup> 보상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조치라 사료됩니다.
- 다음으로 ‘소방사업수익’은 학교안전공제회의 유일한 수익사업으로서 금번 기금운용계획안에서는 소방시설점검에 대한 사업수익금 중

8) 2022년부터 자원봉사 형태의 학생보호 인력인 ‘배움터지킴이’ 공제료(1천 7백만원)가 예산에 포함됨.

9) 「학교안전법」 제2조(정의)

5. “교육활동참여자”란 학생 또는 교직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학교장의 승인 또는 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교직원의 교육활동을 보조하거나 학생 또는 교직원과 함께 교육활동을 하는 사람

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학생의 등교·하교 시 교통지도활동 참여에 관하여 미리 서면으로 학교장에게 통지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거나 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그 단체의 회원으로서 교통지도활동에 참여하는 사람

10) 교육부(2013.2.15.). 배움터지킴이의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지급 대상 포함 관련 안내

11)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인력은 「학교안전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따른 보상 또는 배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공제회의 피공제자 대상에서 제외됨.

일부만을<sup>12)</sup> 기금 전출금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세입세출이 완전히 계상되어야 한다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반하게 되어 예산의 총규모 파악을 어렵게 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향후 시정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 아울러 현재까지 학교안전공제회의 소방시설점검에 대한 사업수익금은 지난 2017년 이후 매년 증가되어 왔으나 실제 소방사업 수익금의 대부분은 소방시설 안전점검을 위한 운영비 및 인건비 비용으로 지출되어 왔는바,([표-4] 참조)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안전공제회 소방수익사업의 운영 전반에 대한 재점검 및 조정을 통해 소방수익사업의 증대는 물론 공제회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여타 수익사업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여 기금 수입 증대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sup>13)</sup>.

**[표-4] 소방시설점검 최근 5년간 수입지출내역**

(단위: 천원)

회계연도	계약학교수	전년도이월액(A)	수입(B)	지출				수지차(D=B-C)	다음연도이월액(E=A+D)
				전출금	운영비	인건비	계(C)		

1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5(공제회의 수익사업 등)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학교시설에 대한 소방·전기 등의 안전점검 대행
2. 소독·청소 등의 환경개선 업무
3. 그 밖에 피공제자의 권익보호 및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13) 학교안전공제회 정관에 따르면 소방사업 이외에도 다양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 정관」 제5조의2(공제회의 수익사업 등) 공제회는 법률 제18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학교시설에 대한 소방·전기 등의 안전점검 대행 사업
2. 학교시설에 대한 소독·청소 등의 학교환경개선 사업
3. 학교시설에 대한 보안·경비 사업
4. 학교체육시설(어린이놀이시설 포함)에 대한 안전검사 및 관리사업
5. 법 제2조의 교육활동으로서 국내·외에서 실시되는 수련활동,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여행자공제사업
6. 그 밖에 피공제자의 권익보호 및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회계 연도	계약 학교수	전년도 이월액 (A)	수입 (B)	지출				수지차 (D=B-C)	다음연도 이월액 (E=A+D)
				전출금	운영비	인건비	계(C)		
2017	408	96,323	1,070,440	120,000	320,580	577,408	1,017,988	52,452	148,775
2018	476	148,775	1,262,084	120,000	392,758	744,595	1,257,353	4,731	153,506
2019	534	153,506	1,498,646	120,000	379,777	820,397	1,320,174	178,472	331,978
2020	550	331,978	1,658,565	160,000	394,221	939,070	1,493,291	165,274	497,252
2021	592	497,252	1,692,352	120,000	478,005	1,047,942	1,685,947	6,405	503,657
2022	600	515,490	1,751,300	160,000	488,213	1,108,008	1,756,221	-4,921	510,569

※ 2021년, 2022년은 기금운용계획 수입액 기준임.

## 2) 예치금 회수

- ‘예치금회수’는 동 기금의 전년도 수입액 대비 지출액의 차이에 따른 이월금으로 2022년도 수입액은 76억 7천 2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치금(73억 9천 4백만원) 대비 2억 7천 8백만원(3.7%)이 증가하였습니다.

### [표-5] 예치금회수 편성 현황

(단위: 천원)

항 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증감액
예치금회수	7,671,855	7,394,187	277,668

- 그러나 예치금을 제외한 동 기금의 수입 대비 지출은 수입(71억 9천)보다 지출(91억 7천 1백만원)이 많은바, 2022년 연도말에는 19억 8천 1백만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표-6] 공제료 수입 대비 지출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별	수입액 (a)	지출액 (b)	잔액 (a-b)
2018	5,869	7,897	△2,028
2019	6,609	8,247	△1,638
2020	7,264	6,221	1,043
2021	6,837	7,227	△390
<b>2022</b>	<b>7,190</b>	<b>9,171</b>	<b>△1,981</b>

- 이와 같은 적자로 인해 2022년도 말 기금의 예치금(56억 9천 1백만원)은 전년도 예치금(76억 7천 2백만원)보다 19억 8천 1백만원(△25.8%)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추세는 2018년부터 지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현 추세대로라면 기금 고갈의 위험성이 크다고 할 수 있는바, 학교안전공제회는 기금 감소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중장기적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표-7] 연도별 예치금현황

(단위: 천원)

'20년도말 현재액	'21년도말 현재액(a)	'22년도말 현재액(b)	증감 (b-a)
8,062,297	7,671,855	5,691,163	△1,980,692

라. 지출계획

- 2022년도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의 지출계획은 공제사업 69억 6백만원, 예방사업 4억 1천 6백만원, 학교안전사고피해자 상담지원 2천 6백만원, 학교폭력피해지원 2억 5천만원, 인건비 및 운영비 15억 7천 3백만원, 예비비 56억 9천 1백만원으로 2021년(144억 3천 9백만원) 대비 4억 2천 4백만원(2.9%) 증가된 148억 6천 2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 동 기금 지출의 주된 증가 사유는 공제사업이 전년도(56억 8천 4백

만원)보다 12억 2천 3백만원(21.5%)이 증가한데 따른 것입니다.

[표-8] 2022년도 기금운용 지출 계획

(단위: 천원)

주요항목		지출계획안		증 감	
		2022년도(A)	2021년도(B)	증감액(A-B)	
학교 안전 망 구축	공제 사업	공제급여 지급	6,602,655	5,318,440	1,284,215
		전문가 자문위탁	32,820	37,300	-4,480
		보상심사위원회	21,000	21,000	0
		소송업무 수행	164,440	174,440	-10,000
		손해방지및긴급조치 비용지원	25,500	25,500	0
		판결금 지원	0	50,000	-50,000
		중앙회 분담금	60,000	57,000	3,000
		소계	6,905,415	5,683,680	1,222,735
	예방사업	416,026	478,330	-62,304	
	학교안전사고피해자상담지원	25,980	27,980	-2,000	
	학교폭력피해지원	249,990	245,990	4,000	
	교직원 온라인 상담창구	0	3,960	-3,960	
	인력 자원 운용	인건비	1,261,955	1,269,416	-7,461
업무추진비		23,800	23,800	0	
운영비		286,930	312,230	-25,300	
소 계		1,572,685	1,605,446	-23,570	
예 비 비	보유준비금	4,410,452	5,068,744	-658,292	
	학교안전사고피해자 상담지원금	100,241	112,140	-11,899	
	학교폭력피해 지원금	1,180,470	1,212,329	-31,859	
	소 계	5,691,163	6,393,213	-702,050	
<b>합계</b>		<b>14,862,259</b>	<b>14,438,599</b>	<b>423,660</b>	

## 1) 공제사업

- ‘공제사업’은 교육활동 중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 및 관련 비용을 보상하기 위한 것으로 총 지출액(69억 6백만원)의 95% 이상은 ‘공제급여 지급’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2022년도 ‘공제급여 지급’ 예산(66억 2백만원)은 전년도(53억 1천 8백만원) 대비 12억 8천 4백만원(24.1%) 증가하였습니다.
- 동 사업의 지출액이 증가한 주된 이유는 공제급여 지급 내역 중 ‘요양급여의 예산(43억 9천 8백만원)’이 전년도(30억 8천 3백만원)보다 13억 1천 5백만원(42.6%)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계적 일상 회복에 따른 등교수업의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코로나19 사태 이전의 평균요양급여 지급건수를 반영하여 확대 편성한 것입니다.

[표-9] 요양급여 예산 현황

사업내역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
	산출기초	금액		
요양급여	399,825원 × 11,000건	4,398,075,000	3,083,200,000	1,314,875,000

- 그러나 현재 확산중에 있는 코로나19 추이를 고려할 때 내년도 학교 내 안전사고가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만큼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바, 학교안전공제회는 지출계획 수립시 보다 면밀한 검토와 판단을 통해 사업비 편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표-10] 최근 5년간 공제료 지급 현황

(단위: 건, 천원)

구 분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위로금 등	계
2017년	건수	12,538	45	0	2	0	12,585

구 분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위로금 등	계
	금액	3,621,514	1,677,769	0	44,918	0	5,344,201
2018년	건수	11,823	41	0	0	0	11,864
	금액	3,267,590	2,611,088	0	0	0	5,878,678
2019년	건수	13,429	39	0	2	0	13,470
	금액	4,223,409	1,938,673	0	0	0	6,162,082
2020년	건수	5,904	40	0	2	0	5,946
	금액	2,254,902	1,800,822	0	209,045	0	4,264,769
2021년 (10월말)	건수	5,414	19	0	0	0	5,433
	금액	2,006,461	1,628,636	0	0	0	3,635,097

- 그 외 ‘공제사업’은 소송비용, 변호사 선임료 등의 소송업무 수행 (1억 6천 4백만원) 및 보상심사위원회 수당 및 운영비(2천 1백만원) 등으로 편성되어 있는바, 공제료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2) 예방사업

- 예방사업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전년도(4억 7천 8백만원) 대비 6천 2백만원(△13.0%) 감소한 4억 1천 6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 그러나 동 사업 중 ‘학교관리자 안전교육 과정 운영’, ‘학교안전사고 조사 및 분석’ 사업은 전년도 대비 1천 1백만원 지출액이 증가 또는 신설(1천 9백만원)되었는바,  
먼저 ‘학교관리자 안전교육 과정 운영’ 사업의 경우 코로나19가 점진적으로 완화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집합연수 과정을 확대하면서 1천 1백만원의 예산이 증액되었고,

다음으로 ‘학교안전사고 조사 및 분석’ 사업은 학교안전사고 원인 및 지급금액의 적정성 등을 분석하기 위해 신규로 1천 9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표-11] 예방사업 현황

(단위: 천원)

사업내역	'22년 지출액 (A)	'21년 지출액 (B)	증감 (C=A-B)
학교 관리자 안전교육 과정 운영	51,076	40,000	11,076
학교안전사고 조사 및 분석사업	19,400	-	19,400
교육청 연계 예방사업	-	23,760	△23,760
학교안전문화 확산 및 홍보	275,750	303,150	△27,400

- 이와 같이 학교안전공제회 예방사업은 주로 학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안전사고에 대한 이해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사업과 안전사고 발생 이후 사고결과에 대한 조사·분석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이 중 안전사고에 대한 이해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사업은 현재 서울시교육청 정책·안전기획관에서 운영하는 ‘안전교육강화’, ‘안전인프라구축’ 등의 사업들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 따라서 서울시교육청 및 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 예방사업 시행에 있어 면밀한 직무분석을 통해 정책안전기획관과 학교안전공제회간에 사업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관 업무에 대한 철저한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표-12] 서울시교육청 정책·안전기획관의 학교안전 예방사업

(단위: 건, 천원)

사업명	2022년도
	본예산 (A)

사업명		2022년도
		본예산 (A)
안전교육강화	재난위기인식도조사및안전교육	64,700
	학교안전교육지원	80,000
	학교안전담당자 안전교육	22,560
	학생안전매뉴얼보완및제작.보급	4,400
안전인프라 구축	교육안전위원회운영	8,980
	안전정책조정회의및 실무협의회운영	3,000
	안전체험교육시설 건립.운영지원	24,000
	유관기관과의협력체계 구축	4,100
	재난대응시스템 구축및훈련	63,270
	초등학교 교통안전지도활성화	112,500
	학교안전평가단운영	10,180
	학교주변통학로 안전강화	15,000
학교안전관리강화	지속가능한학교 안전문화기반조성	62,000
	학교안전사고예방및 재발방지지원	32,000
계		506,690

### 3) 인건비

○ 인건비는 전년도(12억 6천 9백만원) 대비 7백만원 감액된 12억 6천 2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보수(9억 2천 9백만원)와 수당(2억 3천 6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수(월급여)는 전년도(9억 5천 3백만원) 대비 2천 4백만원(△2.5%) 감소되었으며, 수당은 전년도(2억 3천 1백만원) 대비 4,494천원(1.9%)원 증가되었습니다.

○ 그러나 보수(월급여)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감액의 주된 원인이 퇴직금(△50,000천원)인바, 퇴직금을 제외한 현 직원들의 보수액은 오히려 2천 6백만원 증가했으며 수당 증액(4백만원)까지 포함하면 총

3천만원의 인건비가 증액된 상황입니다([표-14]참조).

- 한편 행정안전부의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기금의 인력 운영비(인건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을 따라야 하며<sup>14)</sup> 이에 따른 기금 인건비의 수당 편성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총 5개 분야 14종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표-13]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수당 체계

구분	수당명
상여수당(3종)	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정근가산수당)
	성과상여금
가계보전수당(2종)	가족수당
	육아수직수당
특수지근무수당	
특수근무수당(2종)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초과근무수당등(2종)	초과근무수당(5급이하공무원)
	관리업무수당(4급이상공무원)
실비변상등(4종)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명가휴가비
	연가보상비

- 이와 관련하여 현재 학교안전공제회 인건비의 보수 및 수당 체계를 살펴보면, 직위수당은 예산편성기준 수당 체계에 없는 항목이 편성되어 있으며 직위수당과 초과근무 수당은 중복되어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sup>15)</sup> 5급(부장), 6급(차장)의 경우 직위수당과 초

14) 행정안전부.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 운용계획 수립 기준 [기금지출계획 작성 기준] 인력운영비  
 - 기존의 ‘인건비’로서, 예산편성기준의 정책사업비 및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 개념  
 - 총액인건비 항목에 포함되는 모든 경비가 포함됨

과근무수당을 중복하여 지급받고 있는바, 직위수당 9백만원에 대해서는 삭감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표-14] 학교안전공제회 직위수당 및 초과근무수당 편성 현황

(단위: 천원)

사업내역	세부내역	'22년 지출액 (A)	'21년 지출액 (B)	증감 (C=A-B)	
1.보수(월급여)	직위수당	9,000	-	9,000	
	1) 부장(5급)	5,400			
	2) 차장(6급)	3,600			
2. 수당	초과근무수당	81,754	91,260	△9,506	
	1) 5급	46,600원×3명×16시간×12월	26,842	29,484	
	2) 6급	36,000원×3명×16시간×12월	20,736	23,004	
	3) 7급	26,000원×4명×16시간×12월	19,968	5,508	
	4) 8급	22,000원×2명×16시간×12월	8,448	33,264	
	5) 9급	15,000원×2명×16시간×12월	5,760	-	

○ 아울러 정근수당<sup>16)</sup>은 근무연수에 따라 지급액이 산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학교안전공제회 모든 직원 연봉의 평균으로 예산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15)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

16) 정근수당 지급 기준 [행정안전부.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자금운용계획 수립기준]

근무연수	지급액	근무연수	지급액
1년 미만	미지급	7년 미만	월봉급액의 30% 해당금액
2년 미만	월봉급액의 5% 해당금액	8년 미만	월봉급액의 35% 해당금액
3년 미만	월봉급액의 10% 해당금액	9년 미만	월봉급액의 40% 해당금액
4년 미만	월봉급액의 15% 해당금액	10년 미만	월봉급액의 45% 해당금액
5년 미만	월봉급액의 20% 해당금액	10년 이상	월봉급액의 50% 해당금액
6년 미만	월봉급액의 25% 해당금액		

**[표-15] 정근수당 산출기초**

산출기초	'22년 지출액
48,959,000원×45.0%×2월	44,063 천원

그러나 실제 직원들의 근무연수를 감안한 정근수당을 산출했을 경우, 지출계획 정근수당(4천 4백만원)은 실제 정근수당(4천 2백만원)보다 2백만원 높게 책정되어 있는바 정근수당에 대해서는 삭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sup>17)</sup>.

- 이와 같이 현재 동 기금의 인건비 수당 체계는 행정안전부의 ‘기금 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있는바, 수당 항목 종류 및 항목별 산출 내역에 대해 전면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상으로 「2022년도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7) 정근수당 삭감에 연동하여 정근수당 가산금도 삭감(204천원) 필요

**[붙임] 기금 손해율 및 부족분 비율**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비고
손해율(a)	86.5	84.6	92.5	106.5	101.4	63.1	62.1	96.2	
사업비율(b)	24.3	24.8	26.8	34.4	31.9	25.9	23.0	33.0	예방사업비 포함
합산비율 (c)=(a)+(b)	110.8	109.4	119.3	140.9	133.4	89.0	85.1	129.2	
적정 합산비율(d)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수지상등원칙
부족분 비율 (e)=(c)-(d)	10.8	9.4	19.3	40.9	33.4	-11.0	-14.9	<b>29.2</b>	

※ 2021년은 집행예정액 반영, 2022년은 예산서상 금액 반영하여 산출

1) 손해율: 공제급여지출액/공제료수입액 × 100

2) 사업비율: [((공제사업비-공제급여지출액)+예방사업비+인건비,운영비)/공제료 수입]×100

# 관계 법령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2019. 6. 19.] [법률 제15966호, 2018. 12. 18., 일부개정]

제12조(학교안전공제의 가입자)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학교장은 학교안전공제의 가입자가 된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학교의 학교장은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의 승인을 얻어 학교안전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제15조(학교안전공제회의 설립 등) ① 교육감은 학교안전공제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시·도에 학교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공제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공제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함으로써 성립된다.

제18조(공제회의 사업) ①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공제가입자에 대한 공제료의 부과 및 징수

2.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공제급여의 지급 및 이에 관련된 업무

2의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6항에 따른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치료비 등의 지급, 구상권 행사 및 이에 관련된 업무

3. 학교안전사고의 예방과 관련된 사업

4.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학교안전공제 사업에 대한 교육·홍보

5. 제58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의 운영

6. 학교안전공제에 관하여 교육감이 위탁하는 사업

7. 학교안전사고와 관련된 공제가입자 또는 교직원 등의 지원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학교안전사고 예방 사업 및 학교안전공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등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24조(공제회의 재정) 공제회의 재정은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35조(공제급여액의 결정) ① 공제회는 공제급여의 종류별로 제36조 내지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공제급여액을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 등으로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입은 피해에 대하여 공제가입자 또는 피공제자가 지급하여야 할 보상액 또는 배상액이 확정되는 경우 그 확정된 보상액 또는 배상액(자연배상금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공제급여액으로 보아 공제회가 이를 부담한다.

제52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교육감은 학교안전공제 사업 및 학교안전사고의 예방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공제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공제로 수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기금의 운용수익, 적립금, 결산상 잉여금, 차입금, 기부금과 그 밖의 수입금을 재원으로 하여 이를 조성한다.

제5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공제급여의 지급
  2. 공제회의 재정 지원
  3. 차입금 및 이자의 상환
  4. 학교안전공제제도의 조사·연구·홍보 및 학교안전사고의 예방·교육지원 사업
  5. 제18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료비 등과 관련한 경비의 지급
  6. 그 밖에 학교안전사고의 예방 및 학교안전공제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 ② 제1항제5호에 대한 집행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55조(기금의 운용계획) 공제회는 매 사업연도마다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타법개정]

제10조의5(공제회의 수익사업 등)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학교시설에 대한 소방·전기 등의 안전점검 대행
2. 소독·청소 등의 환경개선 업무
3. 그 밖에 피공제자의 권익보호 및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제24조(기금의 관리·운용) 법 제54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유가증권의 매입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9. 9. 17.] [교육부령 제188호, 2019. 9. 17., 타법개정]

제10조(기금운용계획) ① 법 제55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의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전년도 이월자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적립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 운용에 필요한 사항

② 공제회는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 사업연도 시작 1개월 전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